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91
----------	------

제출년월일 : 2019. 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정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19.10.31.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한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며, 합리적인 직급체계 구성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고 제명을 변경함.
- 나.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안 부칙)
- 다.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비율 4% 이내를 4.5% 이내로 하고, 6급 비율 30% 이내를 32% 이내로 하며, 8·9급 15% 이상을 12.5% 이상으로 함.  
(안 별표 4 제1호)
- 라. 소방직공무원 소방위 비율 8% 이내를 10% 이내로 하고, 소방사 비율 35% 이상을 33% 이상으로 함.(안 별표 4 제3호)
- 마.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이상 39% 이내를 40% 이내로 하고, 5급 상당

35% 이내를 40% 이내로 하며, 6급 상당 25% 이내 및 7급 상당 1% 이상을 6·7급 상당 20% 이상으로 하고, 8·9급 상당을 삭제함.  
(안 별표 4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및 제29조 (붙임 참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20. ~ 8. 23.(3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과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본청

제4조(부시장) ①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 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교통국 및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시민안전실·경제국·일자리투자국·혁신성장국·교통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시민행복교육국·자치행정국·보건복지국·여성가족청소년국·문화체육관광국·녹색환경국·도시재창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조정, 미래시정비전·전략 제시, 혁신전략, 조직·정원 관리, 대구광역시의회 업무, 분권 및 광역행정 등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 지시사항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정보기획, 정보보호 등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분석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재난예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현장 안전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개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조성·재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계로봇 및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유통 등 농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일자리투자국) 일자리투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혁신성장국) 혁신성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성장산업 및 차세대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3.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시티 조성 및 ICT융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안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3. 주차행정 및 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통합신공항추진본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신공항 이전 등에 관한 사항
2. 이전터 개발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시민행복교육국)** 시민행복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정책 및 평생교육정책 수립, 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제14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의전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주민자치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교육훈련,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4. 회계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5. 신기술 활성화 정책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보훈 및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공중·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6조(여성가족청소년국)**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3. 출산정책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 공연문화진흥 및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제18조(녹색환경국)** 녹색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의 수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수질관리 및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5.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7. 취수원 이전에 관한 사항

**제19조(도시재창조국)** 도시재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비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기술진흥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건축정책,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토지관리, 공간정보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제20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진압에 관한 사항의 총괄
2.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의 총괄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제2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22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절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제24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25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질병 등의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각종 의약품·기구·용기·농약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 제3절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제27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2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절 소방서

제31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 관내에 소방서를 둔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2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사 업 소

### 제1절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3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36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
2. 취수·정수, 송수·배수·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에 관한 사항
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요금, 원인자부담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제38조(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시설관리소·수질연구소·정수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별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2절 대구광역시건설본부

**제3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0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터널 공사에 관한 사항
2. 하천·하수도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4.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제3절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제4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3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 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철도건설 기본조사 및 계획
3. 도시철도건설 공사에 관한 사항
4. 보상 및 그 밖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 제4절 대구광역시서울본부

제4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46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국제교류·통상 및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절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제4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9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2.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3. 하천시설물 및 하천 내 둔치의 유지·관리
4.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5.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6. 하천 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7.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8. 그 밖에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 제6절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51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52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매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2. 지정도매인, 중매인, 유통업 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사용료,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5.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제7절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제54조(설치) ① 법 114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5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 제8절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제5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58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기능교육 및 취미·문화교실 운영
3. 다문화이주여성 교육 및 어린이집 운영
4. 청소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노인·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9절 대구광역시여성회관

제6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위기여성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1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 상담, 위기여성 상담·지도 및 보호
3.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안내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절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

제6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여성의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4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교양강좌, 스포츠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문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제11절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제6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예술활동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7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관·향토역사관·대구근대역사관 및 코오롱야외음악당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시립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절 대구미술관

제6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및 건전한 미술활동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미술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0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제13절 대구콘서트하우스

제7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시장 소속하에 대구콘서트하우스(이하 이 절에서 "콘서트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콘서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3조(관장) 콘서트하우스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콘서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2.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 공연 및 유치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
5. 그 밖에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절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7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6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체육경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경기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5절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

제7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9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쓰레기의 위생적 매립 및 처리
2. 쓰레기매립장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3.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전
4. 그 밖에 쓰레기 매립에 관한 사항

### 제16절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

제8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시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82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
2.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공원미화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식물원 및 동물원의 관리·운영
5. 두류운동장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공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제17절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제8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85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공원의 보호
2. 자연공원시설의 유지·관리
3. 자연공원법에 규정한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
4. 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
5. 그 밖에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절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사무소

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에 필요한 수목의 생산·공급 및 수목원을 활용한 시민자연학습장으로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88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초화 및 조경수목 생산
2. 향토자생물 시험재배 및 개발
3. 녹화자원에 관한 연구 및 우량묘 생산·공급
4. 양묘장관리 등 양묘사업 시험에 관한 사항
5. 수목원 내 수목·초화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및 전시
7. 학술연구의 기반제공

### 제19절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

제9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91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린이 과학지식 보급과 자유학습
2. 어린이 문화예술 장려 및 체육진흥
3. 어린이 정서함양과 복지증진
4. 어린이 놀이시설 확대 보급
5. 회관 내 각종 전시관의 과학기자재 설치·운영
6.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93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07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35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1명
3.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631명

제94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 [별표 1]

소방서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3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구중부소방서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대구광역시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대구동부소방서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대구서부소방서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대구광역시 서구 일원 및 북구읍내동, 동호동, 도남동, 학정동, 동천동, 관음동, 구암동, 국우동, 태전동, 매천동, 금호동, 사수동, 팔달동 일원
대구북부소방서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북구 읍내동 동호동, 도남동, 학정동, 동천동, 관음동, 구암동, 국우동, 태전동, 매천동, 금호동, 사수동, 팔달동 제외)
대구수성소방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및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달서소방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원(이곡동, 갈산동, 신당동, 장동, 월암동, 대천동, 호림동, 파호동, 호산동, 죽전동, 감삼동, 장기동, 용산동 제외)
대구달성소방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가창면 제외)
대구강서소방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갈산동, 신당동, 장동, 월암동, 대천동, 호림동, 파호동, 호산동, 죽전동, 감삼동, 장기동, 용산동 및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일원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제38조제2항 관련)

(지역사업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남구 관내	중구·남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동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서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북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수성구 관할 전동,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달서구 관할 전동, 달성군 다사읍·하빈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달성군 관할 전읍·면(다사 읍·가창면·하빈면 제외)· 달성군 논공읍·현풍면·유 가면·구지면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시내 가압장 및 배수지(다만, 정수사업소 및 달성사업소 관할 사업장 제외), 공산댐, 공산정수장

## (수질연구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대구광역시 일원

## (정수사업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매곡취수장 매곡정수장 매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고산정수장 고산배수지 노변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문산정수사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문산취수장 문산정수장 부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가창댐 가창정수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강정취수장(생활) 강정취수장(공업) 죽곡정수장

**[별표 3]****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94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94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4.5% 이내	14% 이내	32% 이내	36% 이내	12.5% 이상	1% 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 이내	84% 이상	12% 이내	88% 이상

##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7% 이내	10% 이내	16% 이내	30% 이내	33% 이상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7급상당
비 율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95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b>총 계</b>	<b>6,073</b>					
<b>정무직 계</b>	<b>1</b>					
시장	1	1				
<b>일반직 계</b>	<b>3,239</b>					
1급						
2-3급	2	1	1			
3급	15	12			3	
3-4급	3	3				
4급	107	73	3	2	28	1
4-5급						
5급 이하	3,106					
전문경력관	6					
<b>연구직 계</b>	<b>155</b>					
연구관	20			17	3	
연구사	135					
<b>지도직 계</b>	<b>26</b>					
지도관	3			3		
지도사	23					
<b>별정직 계</b>	<b>21</b>					
1급상당	1	1				
4급상당	7	1	6			
5급상당 이하	13					
<b>소방직 계</b>	<b>2,631</b>					
소방정	14	6		8		
소방령 이하	2,617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여 그 존속기한을 규정하며, 분장사무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익